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불인정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대상자에게 불인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0. 30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호0영	1988.12.12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통보	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으로 인한 수급 자격 불인정	-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	폐문부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10. 30. ~ 2026. 11. 1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신청은(☎031-739-31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